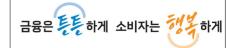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7.19.(금) 조간	배포	2024.7.18.(목)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수신지원부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	지순구 본 정형규 본 박순근 본 최종수 본 이경연 본 조용록 본 장종환 본 이강식 본	- 장(3145-5700), 이 승 팀장(3145-5689) -부장(3705-5070), 박혜정 부장(3705-5040) -부장(2003-9014), 김효실 부장(2003-9420) -부장(2262-6566), 김치국 부장(2262-6631) -부장(3702-8523), 안성준 부장(3702-8670) -부장(397-8617), 양희경 부장(397-8680) 부장(042-720-1860), 최미혜 팀장(720-1891) -부장(2080-5056), 류지민 부장(2080-3200) -부장(2240-2200), 최호준 팀장(2240-2228) - 장(3434-7220), 김태호 팀장(3434-7225)

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해집니다. - 금감원 · 9개 금융업 협회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-

I.개 요

- □ 금융감독원은 '24.4.1.(월) 「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^{*}를 개최하여, 금융소비자가 **상속 금융재산 인출**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**불편**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.
 - 이에,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,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* "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" 보도자료('24.4.1.)

주요 개선내용

제출서류	현행 ▶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·과도 ▶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	Ξ
명확화	개선▶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▶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	
재산인출	현행 ▶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▶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망자의 거래 단위조합에서만 인출 허용	<u>}</u>
간편화	 개선 ▶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▶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(동일업권)을 통한 인출 허용 	F

Ⅱ. 개선내용

1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됩니다.

- □ (현행)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, 중복·과도한 서류를 요구*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* 예)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,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
- □ (개선)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·과도한 서류를 정비*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(☞ '붙임' 참고)하였습니다.
 - * (예시 1) <u>제적등본</u>: "가족관계증명서"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 (예시 2) <u>사망확인서</u>: "기본증명서" 등을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

2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.

- □ (현행)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*으로만 안내하고 있어,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**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- * FAQ 또는 일부 서류양식만 홈페이지에 게시, 챗봇상담 기능만 제공 등
 - ** 상속인 유형(미성년자, 해외거주자 등) 및 상황(유언상속 등)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고,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
- □ (개선)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, 신청서 양식*,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 - * 상속재산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, 위임장 등
 - 또한,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,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.
- ※ 상속인도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제출서류 등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

3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
- □ (현행)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'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*하고 있으나,
 - *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여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 가능
 - 그간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'100만원 이하'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,
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.
- □ (개선)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'300만원 이하'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.
 -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나,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·요건·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
4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(동일업권)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.

- □ (현행)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,
 - **상속인**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**사망자**가 **계좌**를 **개설**한 **단위조합을 직접 방문**해야 하는 **불편**이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(동일업권)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*해집니다.
 - * 단,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(예: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 등)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음

Ⅲ.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[기대 효과]

- □ **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** 및 관련 **안내 강화** 등을 통해 **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*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□ 또한,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 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
 -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,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, 상속인의 해외체류,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[향후 계획]

- □ 위의 **개선내용**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**'24.3분기중 시행**될 예정입니다.
- □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

상속인 표준 제출서류

※ 금융회사별로「상속인 표준 제출서류」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

구분	유형	제출서류	제출사유	비고
필수 서류	공통	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	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	-
	공통	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상속인 범위 ^{주1)} 확인	-
	공통	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	피상속인의 사망사실·시기 확인	-
	미내점 상속인	위임장^{주2)} 및 인감증명서 등 ^{주3)}	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	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
	공통	피상속인의 제적등본	추가상속인 존부 및 '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	① 청구인이 3·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'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
	공통	피상속인의 사망확인(진단)서	피상속인의 사망사실·시기 확인	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
	유언 상속	수유자의 인감증명서, 유언에 관한 증서	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	(유언방식) 자필증서, 공정증서, 비밀증서,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
	유증	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	유언서의 유효성 확인	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
필요시 제출 서류	미성년자 상속인	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제한능력자 상속인의	상속인 중에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
	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	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	법정대리인 범위 확인	※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 관계서류(미내점시) 제출 필요
	해외 거주자 상속인	실명확인증표, 위임장(영사확인 등) ^{주4)}	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	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		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	상속내역 확인	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(「국세기본법」§82⑥)
	협의분할	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	재산분할 내용 확인	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
	상속포기	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	판결내용 확인	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

- 1) 피상속인 기준 부모, 배우자, 자녀(상속 1, 2순위)까지 확인 가능
- 2)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
- 3)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분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3개월 이내 발급분) 등
- 4)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